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8. 27.(목) 10:00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4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0. 8. 19.

라. 회부일자 : 2020. 8. 19.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의 띄어쓰기 등 용어나 표현을 정비함(안 제명, 제4조 등)

다.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0. 7. 23. ~ 2020. 8. 12.(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해당 조문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한 연장은 타당하다 보며
- 안 제6조제3항의 조문 내용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수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결산 및 의회의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 그 밖에 조문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됨.

다.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 사후 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그 밖의 조문들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개정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7호, 2020. 1. 29., 일부개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 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